2022년 코리아시즌
미래교류 지속사업 공모요강

2022. 4.

KOFICE
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

Ⅰ. 사업소개

□ 사업목적

ㅇ 2022년 한국-멕시코 양국 간 국제문화교류 지원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선보일 수 있는 저변 확대 마련 및 지속가능한 국제문화 교류기반 구축

□ 사업개요

ㅇ 사 업 명: 2022년 코리아시즌 - 미래교류 지속사업

ㅇ 사업내용: 2022년 코리아시즌 사업 협력국인 멕시코와 국내 대학생, 준전문인력의 공동 문화예술 창작 및 연구 교류 프로젝트 예산지원

ㅇ 사업방식: 공모를 통한 문화예술 창작 및 연구 프로젝트(공연, 전시, 워크숍, 콘퍼런스 등) 선정

ㅇ 운영절차

4~5월	⇒	5~6월	⇒	6~11월	⇒	12월
사업공모		심사 및 선정		사업추진		결과보고 및 정산

ㅇ 주최/주관 : 문화체육관광부/(재)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

□ 기대효과

ㅇ 국내외 신진 예술단체 및 기관의 지속가능한 국제문화교류 기반을 다지고 다양한 후속 프로젝트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

ㅇ 대중문화 중심으로 확장된 한국문화를 다양한 해외문화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문화교류의 확장 가능성 시사

Ⅱ. 공모개요

□ 공모개요

ㅇ 공 모 명 : 2022년 코리아시즌 – 미래교류 지속사업 공모

ㅇ 공모기간 : 2022. 4. 26.(화) ~ 5.17.(화) / 3주

ㅇ 공모내용 : 2022년 코리아시즌 사업 참여국인 멕시코와 국내

문화예술단체 및 연구기관에 속한 준전문인력* 및 대학생 협업 프로젝트(창·제작 및 워크숍 등) 지원

* 준전문인력 : 문화예술 분야 경력 5년 내외

ㅇ 지원대상 : 국제문화교류를 하고자 하는 국내 문화예술 분야 단체·기관 및 연구기관 등

*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

ㅇ 지원자격 : 멕시코 현지의 예술단체 및 연구기관 등 협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보한 또는 확보 계획인 단체 및 기관

ㅇ 선정규모 : 총 2개 내외 사업

ㅇ 지원내용 : 사업예산(최대 1억 이내)

* 사업예산은 사업심사에서 심사위원의 검토 및 담당자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

사업예산 세부내용
· **지원 예산** : 최대 1억 이내 · **지원 항목** : 문화예술 프로젝트 창·제작 및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① 국내외 여비 : 항공료, 숙박비, 비자발급비, 여행자보험 등 ② 운영비 : 임차료(장소, 차량, 장비), 화물운송료, 홍보비, 콘텐츠제작비, 전문가활용비, 용역비 등

ㅇ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nuri.kim@kofice.or.kr)

ㅇ 제출서류 :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포트폴리오 등

< 사업 방향(예시) >

구분	내용
공연	▪ (**연극**) 협업단체와 공동으로 연극 창작 후 공연 ex) 한국과 멕시코문화가 반영된 창작 또는 각색 연극 ▪ (**음악**) 협업단체와 연주회 기획 후 공연 ex) 양국 음악의 특색을 살린 협업 공연
시각	▪ (**전시**) 건축, 조각, 회화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장르 협업 ex) 전시공간 조성 등 학생 간 공동건축,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한 조형 작품 공동 제작
연구	▪ (**포럼**) 멕시코 내 국제교류 학회 및 연구기관과의 문화예술 분야 공통 주제로 세미나·워크숍·콘퍼런스·포럼 등 기획 및 진행 ex) 코로나19 이후의 국제문화교류 변화

□ 심사개요

ㅇ 심사절차 : ▲1차 서류심사 ▲2차 발표심사

- 1차 서류심사 : 접수서류 심사, 약 1.5배수 선발

- 2차 발표심사 : 사업담당자 PT 발표 및 질의응답

ㅇ 심사위원 : 외부전문가 약 3인 구성

ㅇ 심사기준 : 사업 우수성, 사업 적합성 등 평가

평가항목	내용
사업계획의 우수성	▪ 사업 콘텐츠 및 한국-멕시코 교류 프로그램의 우수성
네트워크 역량	▪ 멕시코 협력 단체 섭외 및 협업 정도
사업수행 역량	▪ 사업수행 및 관리 역량(성과, 리스크, 홍보 등)
지속가능성	▪ 사업의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

Ⅲ. 주요일정

□ 주요일정 *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일정	구분	세부내용
4.26.(화)~5.17.(화)	공모	▪ 이메일 접수 ※ 기한 후 접수 불가
5월 4주	서류심사	▪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
6월 1주	발표심사	▪ 발표심사 및 결과발표
6월 2주	오리엔테이션	▪ 사업 오리엔테이션 -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 지침 안내 등
6~11월	사업추진	▪ 공동 예술창작 프로젝트 제작 ▪ 공동 주제 연구 프로젝트 진행 ▪ 중간 경과보고
12월	정산	▪ 정산 및 결과보고

Ⅳ. 문의처

□ 문의처

ㅇ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기획부 교류기반팀

- nuri.kim@kofice.or.kr / 02-3153-1767, 1766

※ **유의사항**

▪ **심사 제외 대상**

-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보완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
- 제출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

▪ **공모 선정 취소 대상**

- 사업 최종 예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
- 사업 선정 이후 사업계획이 현저히 변경·축소될 경우

■ **국고보조금 지급 관련**

- 지원금은 지원 예산 확정 후 1차와 2차로 분할 지급하며, 2차 지원금은 중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급 결정
- 최종 선정된 사업수행기관·단체는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「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
-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수행기관·단체는 사업수행 중 성희롱·성폭력 방지의무가 있으며, 성폭력 가해자 등이 수행기관이거나 그자가 포함된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가 가능함
- 예산집행·관리에 있어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, 수행기관·단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진행 등 사업운영 시 필수로 이용함

■ **보안 유지**

- 수행기관·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
-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서류, 자료, 설비 등은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
- 수행기관·단체는 본 사업수행 시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
- 사전에 상호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황을 보고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·단체에 있음
-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련 법규(저작권,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)를 준수하여 처리해야 하고, 본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제 권리(저작재산권 등)와 관련하여 반드시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, 적용하여야 함

■ **기타 사항**

- 선정 이후에 사업을 중도 포기할 시,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지원이 불가하며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제출내용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행기관·단체가 타인의 권리 및 지식재산권(저작권 등) 침해 등의 이유로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진흥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
- 사업 진행 시 당초 계획에서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때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함
- 수행기관·단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, 사업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
- 사업운영 관련 제반사항은 총괄기관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조정 및 협의하에 최종결정하고,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라야 함
- 수행기관·단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관련 법적 분쟁 및 각종 소송 발생 시 사용자인 수행기관·단체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함
- 사업운영 관련 제반사항은 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관리운영 필수
-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

- 프로젝트 저작권은 수행기관·단체에 있으며, 주최·주관기관은 지원사업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이용 가능함(예: 제작, 배포, 정책반영 등)
- 진흥원은 사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, 협의, 평가 등을 위해 수행기관·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행기관·단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사업 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
- 진흥원은 수행기관·단체의 사업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업무지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, 수행기관·단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수시로 진흥원과 협의해야 함
- 불가피한 경우 수행기관·단체는 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진흥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
- 사업 종료 후 4주 이내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, 회계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